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6.

발 의 자 : 전진숙 · 최혁진 · 전용기
김정호 · 양부남 · 정준호
박홍배 · 김선민 · 남인순
이인영 · 이정문 · 박 정
허종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·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임(안 제23조제3항제2호).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제2호 중 “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”을 “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

나.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·판매하는 경우. 이 경우 조제·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의약품 조제) ①·② (생략)	제23조(의약품 조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,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재해가 발생하여 <u>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</u>	2. ----- <u>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-----</u> 가.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나.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
<신 설>	
<신 설>	

3. · 4. (생 략) ④ ~ ⑦ (생 략)	<u>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 · 판매하는 경우. 이 경우 조제 · 판매할 수 있 는 의약품의 종류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 3. · 4. (현행과 같음)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